



# 축산물 위생관리법

[시행 2019. 4. 30] [법률 제16434호, 2019. 4. 30. 일부개정]

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### [일부개정]

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·심의하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, 축산물 위생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, 책임수의사 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, 이들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.

〈법제처 제공〉

## ◆ 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(인)

2019년 4월 30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 진영

◎법률 제16434호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8항”으로,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”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.

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
1.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

3. 축산물 위생관리,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·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(職)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29조”를 “제127조 및 제129조”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